

Chubb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B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여행
2. 보험종목의 명칭 : Chubb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B
3. 보험의 목적
 - 1) 피보험자의 신체
 - 2)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 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- 1) 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 - 2) 실손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 - (1) 적용대상(단체계약 제외)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 - (2) 보험료 할인

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(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)로부터 영업보험료의 10%를 할인하여 영수한다. 다만,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.
7. 기타
 - 1)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한다.
 - 2)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
-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의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최고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, 보장종목별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,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.

구 분	보험종목		보험가입금액 한도
기본형	상해급여		5천만원 이내
	질병급여		5천만원 이내
특약형	상해비급여		5천만원 이내
	질병비급여		5천만원 이내
	3대 비급여	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·증식치료	350만원 이내
		주사료	250만원 이내
		자기공명영상진단	300만원 이내

- 이 보험은 해외장기체류자(해외유학·연수생, 교환교수, 상사주재원, 공무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 및 부모, 배우자, 자녀)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아니한다.
- 모집수수료 최고 지급률 : 100%
(근거 : 보험업감독규정 제7-71조 관련 [별표17]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)
-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 -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-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-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 - 기타
 -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-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Chubb. Insured.SM